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3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 제3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10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3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19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부확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만으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초회보험료자동이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과 제3조(보험료)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분할회수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1년	2회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4회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12회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2년	24회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3년	36회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③보험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를 제1조(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보험료의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가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4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3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사고일이 속한 보험년도(이하 "당해 보험년도"라 합니다.)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당해보험년도의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4조(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안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13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 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1개월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특약(이하 「갱신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특약의 계약만료일(이하 「갱신일」 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2.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제2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가 법령 및 표준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약관을 개정하거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하「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보장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제1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대상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조(납입최고기간) ①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보험료(분납인 경우 분할보험료)를 갱신계약전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보험료(분납인 경우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보험료(분납인 경우 분할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 이라 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갱신계약의 계약후 알릴의무)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후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갱신계약의 보장개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 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2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첨 1(장해분류표)】각호에 정한 지급률(이하「지급률」이라 합니다)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사망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 풀이 >

1. 입 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자를 말합니다.

3.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휴일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휴일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용 어 풀 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발,화재 및 붕괴상해사고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내에서 아래에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 침강 또는 사태사고

② 제1항의 1.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의료실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의료실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 풀이 >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합니다.

제2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의료실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 및 산업재해보상 사고의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 풀이 >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을 체결할 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별표2】(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수술한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수술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치매간병비(180일,인식불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치매간병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호에서 정한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치매상태」가 계속되어 보험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치매상태」라 함은 【별표3】「기질성치매 분류표」에 정한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또한 치매에 의하여 다음의 ㉮,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별표4】 「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각 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별표4】 제1항(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별표4】 제2항(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별표4】 제3항(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별표4】 제4항(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별표4】 제5항(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별표5】 「문제행동 분류표」에 규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4조(단체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치매상태」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반암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1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6】의「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⑤ 암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4조(단체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반암치료비 특별약관(Ⅱ)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단, 갑상샘암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의 20%를 보상하여 드리며,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1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6】의「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⑤ 암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

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4조(단체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암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의 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1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합니다.(이하 「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1. 「3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위암, 간암, 폐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3대암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여성특정암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특정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제4조(단체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피내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하며,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 피부암」이라 함은 【별표6】의「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④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4조(단체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손해를 각 1회씩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및 질병 입원의료실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자동갱신특별약관에 의한 갱신의 경우는 최초계약일)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1, 2, 3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의료비총액의 30%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에 증권에 기재된 구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구좌 기준)

보 상 한 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 술 비**
20만원	40만원	20만원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원의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개시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3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 풀이 >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단, 제7조 제1항의 4, 5, 6은 아래 2, 3으로 대체합니다)
2.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3.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다만, 한방병원 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권태,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정상분만,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병실차액,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1】에 정한 「비뇨기계 장해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2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첨1(장해분류표)】각호에 정한 지급률(이하「지급률」이라 합니다)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합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제1항 및 제2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으로서 승강장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⑪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 의 영향으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뇌 · 내장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뇌 · 내장손상」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뇌 · 내장손상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12】의 뇌 · 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12】의 뇌 · 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 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 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 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 · 내장손상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3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뇌 · 내장손상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만성당뇨합병증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만성 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만성 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만성 당뇨합병증 치료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만성 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3】(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만성 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이 500㎎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dl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3.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 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만성당뇨합병증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뇌출혈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의 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별표14】 뇌출혈 분류표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구좌 기준)

구 분	보험금
뇌출혈 진단확정시	100만원

② 제1항의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 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뇌출혈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2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국내외에서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③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5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 (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미리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1억원) 한도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위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영업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보통약관 제27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0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대장기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대장기이식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5대장기라 함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 수술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첨1(장해분류표)】각호에 정한 지급률(이하 「지급률」이라 합니다)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용 어 풀 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⑩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각호에 정한 지급률(이하「지급률」이라 합니다)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용 어 풀 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2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첨1(장해분류표)】각호에 정한 지급률(이하 「지급률」이라 합니다)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용 어 풀 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⑩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벌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 벌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 벌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벌금(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방어비용(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 방어비용(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가족 방어비용(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방어비용(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70일,140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 포함)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사망시
300만원	6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70일,140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 포함)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사망시
300만원	6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15】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70일,140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 포함)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140일이상 진단시	사망시
300만원	6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면허취소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 면허취소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가족 면허취소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면허취소위로금(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부부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가족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면허정지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부부 면허정지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 면허정지위로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면허정지위로금(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긴급(견인)비용(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긴급비용(견인비용)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7. 피보험자의 운전회피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부부 견인(긴급)비용(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긴급비용(견인비용)등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7. 피보험자의 운전회피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 견인(긴급)비용(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긴급비용(견인비용)등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7. 피보험자의 운전회피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부부 생활안정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가족 생활안정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과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법률상의 배우자, 자녀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생활안정지원금(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교원업무중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정의)에서 정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1장 2조(학교의 종류)에 정한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1장 제2조(학교의 종류)에 정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또는 교수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에는 피보험자가 소속된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인 교원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의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을 포함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하여 보험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가 교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학교 및 학교경영자와 교원간의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1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2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 경우 소급담보일자는 피보험자의 최초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개시일로 하며 소급담보일자 이전이나 보험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소급담보일자는 해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개시일로 합

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매청구건별로 보상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④ 위 제3항의 「보험기간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최초로 제기된 시점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⑤ 위 제1항의 「학교업무」라 함은 피보험자인 교원이 자신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합니다)에서 수행하는 교육,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말하며, 피보험자인 교원과 연대하여 학교 또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주의감독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위의 학교업무에는 학교 및 학교경영자가 수행하는 재정, 행정, 운영, 관리상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학교 및 학교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기인하거나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학교 및 학교경영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주의 감독의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강간 및 성희롱에 기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6. 인종 또는 성적차별 등 각종 차별에 기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획득함에 기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자 및 교원간에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단,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9. 피보험자 이외의 교원, 교생실습생, 학교의 행정 또는 관리상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학교에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 자원봉사자 등의 모든 학교 관련 업무종사자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위 제 1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7. 피보험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 피보험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인 교원의 학교업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0. 피보험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의 경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학교시설내에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의 점유를 벗어나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음)에 대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26.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교원 또는 학교 및 그 학교의 경영자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9.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 간호사(양호교사를 포함),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 접골사 등 교원의 학교 업무수행을 제외한 일체의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양호교사의 의료관련 업무와 무관한 학교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1.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4. 다른 보험계약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다음의 경우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1. 제2항의 손해배상금 :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의 나목 내지 다목의 비용중 소송비용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라목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가입금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동일합니다. 단,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

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을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7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교원이 소속된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자가 타인에 대하여 교원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 또는 학교경영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8조(보고연장담보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9조에서 정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1. 보험료의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기준으로서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담보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하였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배상청구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제9조(보고연장담보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만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내의 기간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보고기간은 그 손해배상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담보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기록의 완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쌉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썂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

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 ~ 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골드칼라상해_약관
(2008. 5. 28)

【별표 2】

골 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7.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6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기질성치매 분류표**

「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다」라는 것은 다음의 1.과 2.에 모두 해당되는 「기질성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서 진단확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1.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기질성치매」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Ⅰ.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Ⅱ. 혈관성 치매	F01
Ⅲ.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Ⅳ. 상세불명의 치매	F03
Ⅴ.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 정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

1.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두손 두발로 기거나, 무릎 또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몸을 뒤집지 못하거나 침대위에서 조금 밖에 이동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이동할 수 없다.

2.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식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전혀 식사할 수 없다. (신체의 장해에 의해 요양중이어서 입을 통한 영양섭취 및 식사가 불가하여 혈관 또는 신체에 튜브를 통해 수액제를 삽입하거나 유동식으로 영양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포함함)

3.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배변을 닦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혼자서는 배변을 위해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

③ 잦은 실금(失禁)으로 인하여 기저귀 또는 특수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④ 치료를 위한 절대안정으로 침상에서 특수용기를 사용하여 배설행위를 해야 한다.

4.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몸을 씻거나 닦거나 할 수 없다.

② 혼자서는 욕조에 출입할 수 없다.

③ 혼자서는 전혀 목욕을 할 수 없다.

5.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①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다.

【별표5】 **문제행동 분류표**

1. 배회한다. 또는 길을 잃는다.
2. 과식,거식 또는 이식(異食, 음식물이 아닌 종류를 섭취)을 한다.
3.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또는 신체의 배설물을 묻히거나 만지는 등의 불결한 행위를 한다.
4. 폭력행위 또는 파괴행위를 한다.
5. 흥분해서 소동을 피운다.
6. 불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7. 물건을 훔친다. 또는 마구 물건을 모은다.

【별표 6】 **악 성 신 생 물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 림프종 모양 구진증	L41.2

주) 1.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암병소, 심장, 수막, 뇌-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별표 7】 **상 피 내 의 신 생 물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패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8】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단클론성 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D76.0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9】 **3 대 암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위의 악성 신생물	C16
2.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3. 쓸개(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 신생물	C24
5.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제6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10】 **여 성 특 정 암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2.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3. 질의 악성 신생물	C52
4. 자궁목의 악성 신생물	C53
5. 자궁체의 악성 신생물	C54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 신생물	C55
7.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9.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제6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11】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	N39
2. 치핵	I84
3.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샛길(누공)	K60
4.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농양)	K61
5. 항문 및 직장의 기타질환	K6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2】

뇌 · 내장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 · 내장손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상해名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1. 뇌손상	□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S02.0
	□ 머리바닥뼈의 골절	S02.1
	□ 안와바닥의 골절	S02.3
	□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S02.7
	□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8
	□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9
	□ 미만성 뇌손상	S06.2
	□ 경막위 출혈	S06.4
	□ 외상성 경막밑 출혈	S06.5
	□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S06.6
	□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머리내 손상	S06.7
	□ 기타 머리내 손상	S06.8
	□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S06.9
	□ 머리뼈의 압착손상	S07.1
	□ 기타 머리부분의 압착손상	S07.8
	□ 기타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 혈관의 손상	S09.0
	□ 머리의 다발성 손상	S09.7
2. 내장손상	□ 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	S26.0
	□ 기타 심장의 손상	S26.8
	□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S26.9
	□ 기타 폐의 손상	S27.3
	□ 기관지의 손상	S27.4
	□ 가슴기관의 손상	S27.5
	□ 가슴막의 손상	S27.6
	□ 가슴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	S27.7
	□ 기타 명시된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8
	□ 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9
	□ **가슴의 압착손상 및 가슴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 **가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S35**

2. 내장손상	□ 지라 손상	S36.0
	□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S36.1
	□ 췌장(이자)의 손상	S36.2
	□ 위의 손상	S36.3
	□ 작은창자의 손상	S36.4
	□ 결장의 손상	S36.5
	□ 직장의 손상	S36.6
	□ 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	S36.7
	□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6.8
	□ 콩팥(신장)의 손상	S37.0
	□ 요관의 손상	S37.1
	□ 방광의 손상	S37.2
	□ 요도의 손상	S37.3
	□ 난소의 손상	S37.4
	□ 자궁관의 손상	S37.5
	□ 자궁의 손상	S37.6
	□ 다발성 골반 장기의 손상	S37.7
	□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	S37.8
	□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분의 압착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 골반 기관을 동반한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9.6

주) 1.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의 분류표에서 3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에 대해서는 3단위 항목표에 포함된 4단위 항목의 상병을 모두 보상하며, 4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는 그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상병만을 보상합니다.

【별표13】

만성 당뇨합병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만성 당뇨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2
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0.4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5
2.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1.2
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1.4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1.5
3.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2.2
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2.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2.4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2.5
4. 기타 명시된 당뇨병	
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3.2
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3.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3.4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3.5
5. 상세불명의 당뇨병	
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4.2
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4.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4.4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4.5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4】

뇌 출 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 표준사인질병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